2025년 제4차 공무직 및 업무직 공개제한경쟁 채용 공고

2025년 제4차 공무직 및 업무직 공개제한경쟁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천안도시공사 사장

1. 기관소개

천안도시공사는 2011년 설립되어 지역개발과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지방공기업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라는 미션 달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일등공기업"을 비전 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채용분야

가.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구분	직 군	분 야	인 원	담당업무	
합	계		8		
	공무직 (6명)	매표원	2	• 천안종합운동장 내 사업장(수영장, 볼링장 등) 매표 및 민원응대 등	
공개경쟁		시설관리	2	• 조경 및 파크골프장(백석동, 풍세면, 성남면) 시설물 관리, 매표 및 민원응대 등	
		기계원	1	재활용선별시설 반입장 파봉기 기계 선별 작업각종 압축기 운전 및 관리, 시설 주변 정리정돈 등	
			선별원	1	• 재활용품 수선 별 및 배출 선별 업무, 환경정비 등
제한경쟁	업무직	청소원	1	• 추모공원 내외부 환경미화 등	
	(2명)	경비원	1	• 추모공원 경비 방범 활동 및 안전관리 등	

* 1개 채용분야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나.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정년기준	▶ (공무직) 만60세, (업무직) 만65세 ※ 수습직원 임용 후 수습평가를 통해 정식 임용 발령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근무(근무요일 및 시간은 근무지에 따라 상이함) ※ 부서상황에 따라 주·야 교대(현장) 및 휴일근무가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무장소	▶ 천안시 전 지역 근무 가능자(공사 사업장 어느 곳이나 배치될 수 있음) ※ 필요시 공사 운영에 따라 채용예정 직무와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수 및 복리후생	▶ 천안도시공사 관련 규정에 따름▶ 향후 개인 경력사항 호봉 산입 불가		

다. 근무시간

분야		근무조건
		• 근무시간
공무직	매표원	- 08:00 ~ 17:00 / 14:00 ~ 23:00(교대근무) 또는 05:30 ~
		14:30 / 12:00 ~ 21:30(교대근무)
		• 휴무일: 주1회
		- 주말 근무시간 별도 편성되며, 근무 사업장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무일은 변경 됨

분야		근무조건
		• 근무시간: 교대근무
	시설관리	- 06:00 ~ 15:00(하절기) / 10:00 ~ 19:00
3.5.	시달한다	- 07:00 ~ 16:00(하절기 외) / 10:00 ~ 19:00
공무직		• 휴무일: 주중 1일 또는 2일
	기계원	• 근무시간: 08:00 ~ 17:00
	선별원	• 휴무일: 토요일, 법정공휴일 ※주말 초과근무 발생
	ᅯᆺᆼ	• 근무시간: 07:00 ~ 16:00
	청소원	• 휴무일: 3일 근무 후 1일 휴무
업무직	경비원	• 근무시간: 07:00 ~ 익일 07:00(휴게시간 8시간)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 예정
		• 휴무일: 1일 근무 후 1일 휴무(2조 교대근무)

3. 채용절차

가.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안내됨

구 분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	4차 최종전형
공무직	자격요건 적격여부	인·적성검사	면접심사	결격사유조회 등

4. 응시자격

※ 모든 응시자격 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가. 공무직

	구 분	자 격 요 건
	결격사유	• 공사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성 별	• 제한 없음
	학 력	• 제한 없음
	연 령	• 공고일 전일 현재 만18세 이상 ~ 만60세 미만
	시설관리	• 제한없음
거		• 천안시 거주지 제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자)
 주		- 공고일 전일 기준 1년 전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이외분야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천안시로 되어있는 자
ᅵ지		- 공고일 전일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3년 이상인 자

	구 분	자 격 요 건
	매표원	• 자격증: 아래 자격증 중 1종 이상 보유한 자 <필수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기술자격(ITQ) A등급
자 격 사 항	시설관리	 자격증: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경력사항: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자 조경관련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경력증명서 발급 필수) 조경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시설관리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경력증명서 발급 필수) *시설관리 경력 인정분야: 공조냉동기계 전기 소방 설비 관리 경력에 한 함
	기계원	우대 자격증 소지시, 상위 자격증 1종에 한하여 면접 시 가점 부여
	선별원	• 자격 제한 없음

나. 업무직

구 분	자 격 요 건
결격사유	• 공사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성 별	• 제한 없음
학 력	• 제한 없음
연 령	• 공고일 전일 현재 만50세 이상 ~ 만65세 미만
	• 천안시 광덕면 원덕리 거주지 제한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거주지	- 공고일 전일 기준 1년 전부터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로 되어있는 자 - 공고일 전일까지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2년 이상인 자

5. 시험방법

가.채용전형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실시

나.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선발기준)
0	❶ 서류전형		 공통 응시자격 여부 심사 분야별 모집 공고된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적합/부적합) 응시원서 등 작성 제출서류 누락 및 불성실 기재 시 불합격
	대	상	•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는 전원 필기시험 기회 부여
2		방법	• 인성검사, 적성검사
필 기 전 형	공무직 업무직	기준	• 인성검사: 합격, 불합격 결정 • 적성검사 - 과목: 직무능력검사 - 결정: 인성검사 합격자 중 부가점수를 가산한 총점순위
		배수	5배수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③ 면 접 전 -	변 설 평가기주		 방법: 블라인드 면접 -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름 평정요소 해당직무 이해도(20점) 2. 전문지식과 그 적용능력(20점)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4. 예의·품행 및 성실성(20점) 5. 응용력·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20점)
정	형		• 결정: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단, 면접위원 2명 이상이 각 평정요소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❹ 자격심사		사	•성범죄 등 범죄경력 조회 • 공통 응시자격 여부 서류 확인 등

6. 세부 시험내용

가. 1차 서류전형: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나. 2차 필기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실시

1) 공통사항

가) 서류전형(응시자격 적격여부)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실시

나) 시험일자: 4. 12.(토) 예정

다) 시험장소: 추후 공지

라) 시험과목

- 시험과목: 인성검사(합격/불합격), 적성검사(직무능력검사)
- 합격자 결정: 인성검사 합격자 중 적성검사 부가점수를 합한 총점순위로 함
-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득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 배 수: 분야별 모집인원의 5배수

다. 3차 면접전형: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 면접방법: 블라인드 면접 / 구조화면접 / 구술면접 / 1 : 多 면접
- 평정요소: 천안도시공사 면접평가 기준에 근거
- 평정방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이하)로 평정하고 부가점수를 가산한 뒤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 단, 시험위원 2명 이상이 각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 결정
 - ①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
 - ② 면접시험 평정결과 평정요소 순으로 득점이 높은 사람
 - ③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다수 소지한 사람)

라. 예비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 중 미등록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로 아래와 같이 예비합격자를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선정**
- 사유 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 유효

7.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2025. 3. 31.(월) ~ 4. 7.(월) 13:00까지
- 나. 접 수 처: 천안도시공사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cauc.or.kr/)
- 다. 제출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8. 가산특전(가점기준)

가. 가산 대상 및 비율

구 분	세 분	가 산 점 수	비고
취업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각 전형별	사회적 약자 가점에 해당되어도
대상자		5% 또는 10%	중복 적용 불가
사회적	장애인, 다문화가족,	각 전형별	중복 적용 불가
약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3%	

나. 가산점 적용 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 직급별·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동일분야 최소 4명 이상 채용 시 적용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9.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원서접수시 온라인 제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필기시험 응시자 확인용)	필기전형 전 온라인 제출
공통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거주지 변동사항 기재분) 각종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가산특전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면건나들이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사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면접시험일 제출

10. 채용 절차별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채용공고	2025. 3. 28.(금) ~ 4. 7.(월) / 10일간
원서접수	2025. 3. 31.(월) ~ 4. 7.(월) 13:00까지
서류합격자 공고	2025. 4. 10.(목)
필기전형	2025. 4. 12.(토)
면접전형 공고	2025. 4. 16.(수)
면접시험	2025. 4. 18.(금), 4. 21.(월)
최종합격자 발표	2025. 4. 23.(수)
임용대상자 등록	2025. 4. 24.(목) ~ 28.(월) / 3일간
임용(예정)	2025. 4. 29.(화) / 매표원 1명, 시설관리 2025. 7. 1.(화) / 기계원, 선별원, 청소원, 경비원, 매표원 1명**

- ※ 채용 일정은 공사 사정 등으로 변동 가능 별도 공고
- ※※ 매표원 임용 예정일: 4. 29(화) 또는 7. 1.(화)
 - 면접 순위에 따라 상위 순위자부터 순차적으로 임용 예정

11. 기타 안내사항

- 가.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1)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
 - 2) 대 상: 해당분야 최종시험 성적 차점순위에 따라 결정

예비합격자는 합격 유효기간 중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채용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원된 인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발기회를 부여 하는 것이며, 향후 채용 예정 등의 특별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님

- 나. 채용 제출서류 반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1)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 2) 청구양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3) 반환방법: 신분증 지참 후 본인 직접 방문(공사 경영지원부)하여 수령

다. 모든 절차에 대한 안내는 아래의 누리집(홈페이지)에만 공고

- 천안도시공사(www.cfmc.or.kr)
-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cauc.or.kr/)

12. 문의사항

이 공고문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 채용 누리집(홈페이지) 문의게시판(Q&A) 또는 천안도시공사 인사총무팀 (☎ 041-559-3623, 36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가능시간: 평일 09:00 ~ 18:00(단, 12:00 ~ 13:00 제외)

13. 유의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일반사항	▶ 지원서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중복지원·자격 미비자의 응시,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한 내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블라인드 채용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의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 불합 리한 차별(응시자격요건 관련 항목 제외)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상기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발언 하여서는 안 됨.
공정채용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사청탁을 금지하며,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재응 시자격을 제한하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수 있음.
중복지원	▶ 중복지원 불가 - 해당 공고문 내 중복 지원 시 모두 무효처리
시험공고	▶ 추후 전형절차 진행에 따른 시험장소, 세부일정, 합격자명단, 임용 구비서류 등 모든 사항은 천안도시공사 및 채용 온라인 누리집을 통 하여 공고함.(개별 연락 없음)

구 분	주 요 내 용
마감시간 오 류	▶ 원서접수 마감일 및 마감시간 임박해서는 지원자가 몰려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여유시간을 가지고 지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는 지원서 미제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규정위반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자격사항은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 받을 예정이오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합격취소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람.
합격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임용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함.)
미 채 용	▶ 우리 공사의 채용 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서 활용	▶ 접수된 입사지원서는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반환 기간 이후 모든 서류는 파기합니다.
임용일 조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감염병 증상자 발생 또는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임용일이 조정될 수 있음.
정상 출근	▶ 임용 예정일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시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야간 및 휴일근로	▶ 최종합격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 ~ 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람.
친인척 공개	▶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하기 때문에 최종 신규 채용 되는 직원 중 공사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 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함.

14. 결격사유

- 가. 공사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8.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0.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1.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 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